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305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변세정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체결한 재산분할을 8,997,3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8,997,38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원고에게 2024. 7. 12. 기준 8,997,388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있다. 그런데 D은 2021. 3. 12.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산분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8,997,388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21. 3. 12.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민정

별지